

여성성소수자

한국레즈비언상담소¹⁾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 ▶ 전략적 목표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확실하게 한다.
- ▶ 전략적 목표 B.3. 직업훈련, 과학과 기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시킨다.
- ▶ 전략적 목표 B.4. 반차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개발한다.
- ▶ 전략적 목표 B.5.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C. 여성과 건강

- ▶ 전략적 목표 C.1. 생애주기를 통해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정보와 관련 서비스에 여성이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략적 목표 C. 3. 성적 접촉 감염질환, HIV/AIDS 그리고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 이니셔티브에 착수한다.
- ▶ 전략적 목표 C. 4. 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고 정보를 확산시킨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 ▶ 전략적 목표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를 취한다.
- ▶ 전략적 목표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방조치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F. 여성과 경제

- ▶ 전략적 목표F.2. 자원, 고용, 시장과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 ▶ 전략적 목표F.5. 직종분리와 모든 종류의 고용에서의 차별을 제거한다.

I. 여성의 인권

- ▶ 전략적 목표I.1. 모든 인권 관련 방법,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김현철(처리), 송정윤(야랑), 이진화(케이)가 공동 작성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열렸던 Beijing+20/Post+2015 여성운동 미래 전망 만들기 의제별 간담회 “한국사회여성성소수자인권현황 보고 및 정부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제언”부문에 패널로 참석하여 보고서의 구성과 목차에 대해 함께 꼼꼼히 검토해 주신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진경 님, <반성매대인권행동 이룸> 의 숨 님,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정현희 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훌릭 님께 감사드린다. 패널 분들 외에 다른 참석자분들도 유용한 제언들을 주셨다. 보고서 상의 한계와 오류는 전적으로 집필자들에게 있다.

➤ 전략적 목표I.2. 평등과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상으로도 보장한다.

L. 여아

➤ 전략적 목표L.1.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한다.

➤ 전략적 목표L.2.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철폐한다.

➤ 전략적 목표L.3.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그녀들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전략적 목표L.4. 교육, 기술개발과 훈련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 전략적 목표L.7.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I. 들어가며

북경여성행동강령은 성적지향, 성별표현, 성별정체성이라는 항목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없다. 그러나 여성성소수자 또한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주체이다. 하기에 상기한 강령의 전략 목표들은 고스란히 여성성소수자의 인권 의제이기도 하다.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모든 여성의 인권 보장은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들의 인권 보장 없이는 이를 길 없는 목표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이십 여 년 간 여성성소수자 인권 의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그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폭이 확장되고, 법제도 제·개정 운동을 통한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낼 운동 진영의 역량이 차츰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이 반가울 따름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먼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아우르는 여성성소수자의 한국 사회 인권 현황을 짚고 운동의 성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위의 전략 목표 항목들과 관련하여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여성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주거권, 의료권,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II. 국제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성소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과 법제화 현황을 간략하게만 제시한다. 제한된 지면상 연도별 변화상까지를 자세히 담을 수 없기에 주요한 유형과 흐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1. 성소수자 관련 법제화 현황 세계 지도 (출처: ILGA(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2014년 5월, Lesbian and gay rights in the world, 재구성 : 이지연, 김현철)²⁾

1. 성소수자 권리를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지역/기구

2014년 현재 국제사회는 성소수자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행하는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하는 지역³⁾이다. 해당 군의 국가나 주의 경우 그 해당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동성 결혼/시민 결합(파트너십)을 인정하며 그에 걸맞은 세금, 복지, 입양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영토 기반의 지역이 아닌 국제기구의 층위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경우도 존재한다. 국제연합(유엔)의 경우, 직원들의 동성 결혼을 각 나라의 법에 따라 허용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7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결혼한 유엔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성 결혼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⁴⁾

2) 해당 지도는 ILGA(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의 2014년 5월 지도(ILGA, 2014/5, Lesbian and gay rights in the world: <http://goo.gl/jd1ALW>)를 재구성한 것이다. 성소수자관련 정책이나 법의 제정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결합/동성 결혼법 및 성소수자 차별법의 유무를 중심으로 지도상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도에 표기된 특정 지역에서의 시민 결합/동성 결혼법제화 현황이 그 자체로서 성소수자의 권리증진의 지표인 것은 아니다. 시민 결합/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해당 법을 향유할 수 있는 성소수자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누리는 권리의 정도 차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성소수자 운동 의제의 위계화된 구도 속에서 주변화되어 왔던 빈곤, 혐오 폭력,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재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이때 '지역'은 단위로서의 국가(nation) 혹은 주(state)로, 특정 영토(territory)를 가리킨다.

4) "UN widens its same-sex marriage policy to include all legally-married staff", UNNews Centre, 2014/7/8. <http://goo.gl/HY71WU>.

2. 성소수자 처벌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지역

두 번째 군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들의 집단화/정치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지역이다. 알제리, 수단, 우간다, 리비아 등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군에 속한다. 또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서남아시아 지역 대부분과 인도, 미얀마 등의 지역에서도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러시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치 올림픽에서 이러한 러시아의 동성애혐오적 법안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3. 성소수자 관련 법제화가 전무한 지역(한국 포함)

마지막 군은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와 동북아시아, 중 아프리카 국가 일부, 중남미 국가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도 포함된다. 해당지역 국가들 가운데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만 된 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가 있는 한편 논의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관련 논의 자체가 아예 사회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지역 역시 존재한다.

4. 기타: 종교계의 지지와 연대

종교계에서는 일례로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의 친 동성애적 발언⁶⁾이 있었다. 최근에는 바티칸은 2014년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 예비보고서 문서에 동성애와 관련한 부문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비록 찬성 2/3을 넘지 못해 보고서 내용에 담기지 못했다. 그러나 예비보고서 문서에 “동성애 커플도 가톨릭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파트너의 삶에 귀중한 도움을 주고 있다”⁷⁾ 라고 명시한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에 보수적이었던 가톨릭의 시각이 변화할 여지를 내포한다는 데서 유의미하다.

III. 국내실태

국내의 경우 사법권이 발휘되는 성소수자 관련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2006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2013년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서 성기성형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⁸⁾을 내린 것,

5) 여기서 동성애 선전이란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나 소위 ‘남녀 간의 정상적 성 관계’외의 성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유포/주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관련 뉴스: “러시아 하원, 아동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안 채택(종합).” 연합뉴스. 2013/6/12.<http://goo.gl/adj3xU>.

6) 교황은 “만일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경향신문. 2013/7/30. “교황, ‘동성애 판단하지 않겠다.’” <http://goo.gl/gnEzAR>.

7) “프란치스코, 가톨릭개혁 이뤄낼까.” 여성신문. 2014/10/15.<http://goo.gl/BJLb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⁹⁾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법망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¹⁰⁾에 따르면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지수(무지개 지수)는 15.15%로, 영국(약 77%), 벨기에(약 68%), 노르웨이(약 67%)와 비교하여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군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1.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속적인 좌절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안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 10월 입법예고되었다. 애초의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별 존재를 차별해서는 안됨을 천명하는 동시에 특정 조건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국가가 그간 주변화되어 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우익 기독교계 등 특정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성적지향을 포함한 여러 항목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법안이 발의만 되었다 하면 드세어지는 그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현재까지도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학생인권조례부문에서 ‘성적지향’ 부문을 둘러싼 경합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생인권조례에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라북도로, 조례의 ‘소수자’항목에 성적지향부문이 들어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장치가 미비하게나마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적지향 항목은 혐오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될 위험에 처해 왔다. 실제로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문용린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이 수정안은 성소수자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 시민들의 저지로 더 이상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그 후로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11/19. 사건번호 2013 호파 1406 등록부정정(성별 정정) 판례 참고.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 p.11

금지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특정 세력의 요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4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관공서, 학교, 군대에서의 동성애혐오 가시화

또한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관공서의 차원에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다양한 ‘퀴어’들이 마포구 일대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마포구를 “우리 동네”로 느끼고 있음에도, 마포구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정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불허¹¹⁾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마포구청은 무지개행동의 ‘커밍아웃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던 홍대 앞 나무 무대를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허하기도 했다.¹²⁾ 2014년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서대문구의 경우,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으며¹³⁾ 퀴어 퍼레이드를 막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¹⁴⁾ 실제로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에 혐오세력이 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을 때에도 마포구청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과정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특정 보수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한 강남권역, 강북권역 토론회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로 인해 오히려 인권침해의 현상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의제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2013년에는 동성애혐오성괴롭힘으로 인한 성소수자 학생의 자살에 대해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¹⁵⁾ 이처럼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는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존중받는 방식으로 사회 관계망을 구축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외에도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상황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92조6이 존속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1) 해당 사건에서 마포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 시정위원회로부터 “관할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국가인권위원회, 2013/6/13. 사건 12 진정 0909300결정 참고)”을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 “마포구청, 성소수자 문화제 불허 ‘반인권’ 차별.” 미디어 오늘. 2013/11/21..<http://goo.gl/XtHKH8>.

13) “[독자투고/문석진] 동성 결혼 반대한다.” 동아일보. 2013/12/27.<http://goo.gl/0rVNon>.

14) “서대문구청장, 당선 다음날 ‘퀴어퍼레이드 막으라’ 지시.” 민중언론참세상. 2014/06/17.
<http://goo.gl/5RLv4v>.

15) 대법원. 2013/7/28. 선고 2013다 203215 판결 참고.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률망은 부재하며, 학교와 관공서, 군대 등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한 차별 상황을 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 차원에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안 차별과 폭력, 고용상 차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정 등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이나 차별금지법 마련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성소수자의 건강권과 주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내 차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여성성소수자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범과 비교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낳고 있는 각 부처별 정책과 집행 기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1. 법무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수 종교계와 재계의 반발에 따라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를 삭제한 채 차별금지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았음에도¹⁶⁾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까지 제시하였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2011년에 가결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과 2014년에 가결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제27 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¹⁷⁾에도 찬성표를 던진 국가다. 그럼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대내적으로는 성소수자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

16)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2009/12/1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DAW/C/KOR/CO/7), 2011/7/29;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3-4), 2011/10/6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RD/C/KOR/15-16), 2012/9/5;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 검토(UPR)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22/10)

17) 원문 바로 가기: <http://goo.gl/Nn2P2F>.

참고: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이사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반차별과 반폭력을 결의하다.” <http://goo.gl/HYHs6x>.

직임을 보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이다.

2. 교육부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교육부 차원의 정책은 부재하며 학교 및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전반에 만연한 동성애혐오적 문화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¹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구제 창구 또한 부재하다.

현행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를 차별 근절과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요원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교과서 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등 역행하는 흐름마저 보이는 추세이다. 한국의 고등 사회교과서는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사회적 소수자중 가장 주변화된 존재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¹⁹⁾ 교육부는 2014년 3월 보수 기독교/반동성애세력의 수정 요구를 받아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한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까지 승인한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많고,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 “성적소수자는 전염성 있는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성문화를 문란하게 한다.”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편견은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2010년 이후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학생 차별금지를 조례로써 명시하고자 했던 흐름²⁰⁾과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흐름과도 전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2013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는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 걸림돌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²¹⁾

3. 고용노동부

고용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²²⁾를 진다.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조에서도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소수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2009년 일반논평을 통해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사유로서 기타 신분(other status)에 성적지향

18)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 2011

19)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콜로키움자료집,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2014

20)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201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2013)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2012)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1) UNESCO,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2013.

22)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노동권팀, 「세계노동절 기념성 소수자 노동권토론회 자료집: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들」, 2014.

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됨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은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그 심각성에 비해 가시화되는 바가 매우 적는데, 이는 성소수자가 정체성이 드러날 경우 채용 자체가 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해고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고용 중 차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제기할 경우 후속적인 불이익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이다.²³⁾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 성차별/성소수자 차별적 문화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별예방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4. 여성가족부

여성성소수자의 비가시화는 정부 여성정책의 여성 범주에서 여성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 성소수자에 대한 인지부족 혹은 인지 없음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 12월 여성부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제7차 이행 보고서에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여성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해서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가하기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협약이라면, 이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이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을 종식시키는 역할도 요구하는 협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근절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지원정책, 여성의 가족 구성권과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여성성소수자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여성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차별과 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특히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혐오 폭력을 다루는 정책 마련 및 시행 역시 절실하다.²⁴⁾

5. 국토교통부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범에 포함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족 구성권에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나 비혼 동반자 관계로 살아갈 권리 등을 포함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요그야카르타원칙²⁵⁾에는 가족 구성의 권리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며, 가족이 다양한

23) 위와 같은 자료집.

2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2011.
<http://goo.gl/7UeysQ>.

25) 「요그야카르타원칙」 국역본: 국제인권소식“통” <http://goo.gl/od9hBA>.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의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성간의 혼인 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가족 단위만을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 즉,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 보장 또한 그러한 정상가족의 울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인, 비혼, 빈곤, 여성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 기준은 ‘이성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특정 가족 형태를 장려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빈곤의 심화, 비혼 비율의 증가, 청년 단독 세대 및 독거노인 세대와 같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정상 가족 중심의 인구정책수단으로 설계되는 한국사회 주거 정책 전반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6. 보건복지부

1) 국민건강보험 적용차별

함께 사는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놓여 있는 이성부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 배우자 1인이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또 다른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별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3) 트랜스젠더 보험 적용차별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요건²⁶⁾에 부합하기 위해서나 MTF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²⁷⁾ 성주체성장애라는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처방, 그리고 고환적출에 이르는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에 요구되는 의료적 과정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 정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안정적 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적 조치과정의 문제나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6)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 (조사사항)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전환 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생식능력 상실이 성별정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http://goo.gl/9EvKoA>.

27)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성주체성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환적출을 하지 않고는 면제가 불가능하다.

V. 운동 진영 현황 및 평가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²⁸⁾(이하 <끼리끼리>)가 북경 여성회의 B+10 심포지움에서 정부 정책 이행분야별 평가 “성적소수자” 부문 발표를 한 뒤로 한국사회의 여성성소수자운동²⁹⁾은 분화와 확장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한편으로는 레즈비언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여성성소수자 정체성, 경험, 입장을 수면 위로 띄워 올림으로써 더 이상 레즈비언 의제가 여성성소수자운동을 과잉대표하지 않도록 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소수자들이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별 표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각종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해온 현실에 대항하는 연대의 흐름이 성소수자운동 진영 안팎에서 계속되었다.

여기서는 여성운동과 여성성소수자운동, 성소수자운동의 분화/확장과 다양한 여성성소수자의 가시화, 연대활동 및 지지망 형성을 위한 여성성소수자 역량 강화, 성소수자 정치운동/진보정치 재구성과 여성성소수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경험에 대한 지표화 및 이론화 이렇게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여성성소수자운동의 현황을 살피고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여성 운동과 여성성소수자 운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미미한 변화

북경 여성회의 B+10심포지움에서 <끼리끼리>는 제도화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대표체나 다름없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성소수자부문을 그저 구색맞추기 식으로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말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여연>의 전망과 활동 속에서 성소수자의 경험, 관점, 욕구를 녹여내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연>은 가령 심포지움 이후 이어진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 등록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장한 사안별, 목적별 공부대안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많이 나간 요구라 호주제 폐지 자체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소수자 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타협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침해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성소수자운동 진영의 실망을 자아냈다.

2006년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나 정부의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에서도, 정상 가족 중심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수립되는 경향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저출산-고

28) 2005년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른다.

29) 북경여성회의+10심포지움을 전후로는 <끼리끼리>와 더불어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부산/경남지역 레즈비언 모임 안전지대를 전신으로 하며 2014년 현재 단체 해소 상태이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현재는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로 활동 중이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이후 <레즈비언권리연구소>로 개칭하며 2013년에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로 전환하였다), <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2005-2006) 등의 여성성소수자단체들이 존재했다.

령 사회를 문제로 인식하는 틀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못하는 등, 정부 정책의 보수적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여연>은 최근 들어서는 2012 총선에 대응하며 100대 젠더 정책과제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거나³⁰⁾, 각종 성소수자인권문제 관련 성명서에 연명하고,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연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제기 기자회견’³¹⁾에 대표가 참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연>차원에서 성소수자관련 내용을 직접 생산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2) 개별여성단체들의 실질적 변화

<여연>의 아쉬운 모습과 달리 개별 여성단체들³²⁾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 변화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 <여성의 전화>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해당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커리큘럼에 성소수자부문을 고정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특강을 마련하여 성소수자단체 활동가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단체가 점점 더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커밍아웃하고 활동하기에 어렵고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지지적인 활동 환경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경험과 입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당 여성단체의 주력의제/사업의 고민과 실천의 지평을 넓혀온 여성단체들도 있다. 가령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뒤로 군대라는 공간에서 여성 혐오, 호모포비아, 위계질서가 뒤엉키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경우 한 사람의 삶에서 성소수자로서의 경험과 성판매자로서의 경험이 엮이는 특수하고도 보편적인 고리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2010년부터 계속해 왔으며, 오는 11월 18일 그간의 고민과 연구를 정리하여 “소수자성매매 연구 2010-2014”라는 제목의 포럼을 연다.³³⁾ 이 같은 실천들은 성소수자 운동은 성소수자단체만 하고 여성성소수자운동은 여성성소수자단체만 하는 식의 분리적 기획을 넘어선 것으로, 여성운동이 각 분야별로 저마다 해당 분야의 활동 내용에 성소수자의 경험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2. 성소수자 운동의 분화/확장과 다양한 여성성소수자의 가시화

30) “한국여성단체연합, 총선 20대 핵심 과제 발표,” 매일 노동뉴스. 2012/3/8.<http://goo.gl/W7gVVJ>.

31)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동성 결혼소송,” <http://goo.gl/pN9brE>.

32) 이때의 개별여성단체중 상당수는 여연 소속 단위이지만 연합체란 소속단위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소속단위의 성과를 연합체 자체의 성과로 볼 수도 없다.

33) 숨, “성적소수자의성 매매를 상상한다는 것,” 인권오름 411호. 2014/10/15. <http://goo.gl/rytgka>.

1) 다양한 성소수자 주체의 활약

북경 여성회의 +10심포지움 이후 성소수자운동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담지한 성소수자들이 본격적인 운동 주체로서 활약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 그리고 바이섹슈얼의 가시화가 두드러졌다.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직접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기획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여러 청소년 의제에서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였고, 비십대 성인 중심의 기존 성소수자운동이 간과하였던 지점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며 비판적 연대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중심의 모임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커뮤니티 라틴>(2008-)과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2012-),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청소년 모임인 <청소년 동인련>을 들 수 있다.³⁴⁾

트랜스젠더운동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활동을 디딤돌 삼아 트랜스젠더 인권을 사회적인 의제로 가시화시키기 시작하였다. <트랜스젠더 인권활동 단체 지령이>(2006-2012) 이후 트랜스젠더 인권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는 단위로는 현재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 트랜스젠더 인권 지지 기반 구축 프로젝트 기획단’(2013-) 및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2013-) 등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뒤로 커뮤니티와 운동의 현장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했으나 한국의 성소수자운동 구도에서 고유한 목소리를 조직할 기회를 미처 갖지 못했던 바이섹슈얼도 동성애자 정체성과 경험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 경험을 독자적으로 의미화하는 체계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 결성된 <바이 모임>과 이들이 펴내는 바이섹슈얼 웹진³⁵⁾이 대표적이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소수자운동 진영 내부에서 여성성소수자와 레즈비언이란 암암리에 건 노골적으로 건 상호 대체가능한 범주로 간주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여성 바이섹슈얼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인권 의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 속에서 그와 같은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또한 적어도 성소수자운동 진영에서는 MTF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의 경험, FTM 트랜스젠더 게이로서의 경험이 낯설지 않다. 동성애 대 이성애라는 이분법, 비(非)성전환상태의 자연화/규범화,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사이의 부당 대립구도 등이 공히 문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여성성소수자 진영은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2) 성소수자운동채널의 다각화

성소수자운동진영은 운동 주체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운동채널의 다각화 또한 경험해

3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의 단체들도 각 단체별 십대 관련 기획 프로그램이나 단체 내부 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본문에서는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 나가고 있는 단위 위주로만 언급하였다.

35) 2014년 3월 창간호를 냈고 올 하반기 중으로 2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http://goo.gl/XOP0ZB>.

왔다. 그중에서도 크게 미디어운동과 마을운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주목을 요한다.

여성성소수자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주체들로는 다음 세 조직이 대표적이다. <레즈파>는 마포 공동체라디오에서 2005년부터 레즈비언의, 레즈비언에 의한, 레즈비언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인 “L양장점”을 방송하고 있다. <여성영상집단 움>은 십대 레즈비언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다룬 「이반검열 1」(2005)과 십대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경험을 담은 「Out:이반검열 2」(2007)를 제작하였고, 장년층, 노년층 레즈비언의 삶과 역사를 조명하는 「달남자」(가칭) 및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실태를 짚어내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는 「3XF™」(2008), 「레즈비언 정치도전기」(2009), 「종로의 기적」(2011)으로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삼부작을 만들어냈다.³⁶⁾

성소수자 마을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운동흐름과 그 궤를 같이한다. 성소수자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 운동은 성소수자로서 지역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고, 그 사회의 운영에 다방면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이는 뜻을 같이하는 성소수자 주민들이 지역에서 서로의 지지망이 되어 주는 시도이기도 하다. 2010년 지역 유권자 운동으로 시작하여 마포구청과의 지난한 투쟁이 된 마포구 성소수자 현수막 걸기 운동³⁷⁾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2010-)가 그 긍정적인 모델을 잘 보여준다.

3. 연대 활동 및 지지망 형성을 통한 여성성소수자 역량 강화

연대활동의 강화와 지지망의 확장은 성소수자단체 각 단위나 성소수자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공동의 활동 속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배제에 맞선 지구력, 회복력, 대응력을 길러 나가는데 핵심적이다.

1) 상설연대

한국사회 성소수자운동 진영이 현재 연대활동의 구심으로 삼고 있는 단위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다. <무지개행동>은 2007년 차별금지법투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에서 출발하여 단체들과 개인들이 결합하는 상설 연대체로 2008년 공식 발족하였다. 해마다 국제 동성애/성전환(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행사 및 LGBT인권포럼 등을 주최해 왔으며, 갈수록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를 띠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전략도 함께 수립한다. 정부기관, 교육계, 종교진영, 언론 등과 싸워야 하는 경우, 즉, 조직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큰 사안의 경우 무지개행동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공동대응을 기획한다. <무지개행동>의 제안으로 보다 폭넓은

36) 이외에도 다양한 성소수자 웹진 및 팟캐스트들이 존재하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성소수자들의 개인 활동양상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해당 지면에 일일이 수합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37)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마레연 현수막 ‘제대로 걸기’ 대작전- 액션 공지!!!” <http://goo.gl/qmuXLC>.

비상설연대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싸움을 위해 결성됐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⁸⁾

다양한 의제들에 두루 대응하는 포괄적인 상설연대체인 무지개행동과 달리 특정한 활동의제나 연구목적에 둔 연대체들 또한 존재한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2006-)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 등록 방식으로 목적별 공부제를 요구하였던 <목적별 신분 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 행동>의 활동을 계기로 의기투합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2013-)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 대응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이라는 의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단위로 현재 김조-김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은 해소된 상태이지만 여성성소수자 운동사에 의미 있는 역사를 남긴 연대체가 둘 있다.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³⁹⁾는 독자적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표방하는 ‘레즈비언’ 단체들의 연대체로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대의 레즈비언들과 교류 나누는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⁴⁰⁾는 소수자 여성들에 의한 소수자적 관점의 연대체로서 단위 간 개인 간 일상적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3.8 여성의 날 주류 여성운동이 간과하는 인권의제들을 펼쳐놓는 대안적 행사로서 무지개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2) 지지망

처음성소수자운동이 시작되었던 구십년대 초중반이나 북경 여성회의+10심포지움이 열린 십여 년 전과 비교하여 괄목할만한 변화로 사회 여러 영역과의 협력이 빚어낸 탄탄한 성소수자 지지망을 빼놓을 수 없다. 변호사 모임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03-)과 <공익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2012-)이, 의료기관으로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09-)과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09-)이, 심리상담기관으로는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연구소>(2011-), <여성상담공동체 옥탑방상담소>(2013-), 그리고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2012-) 등이 성소수자운동의 중요한 동반자들이다. 이들은 성소수자가 입은 폭력과 차별을 문제삼는 소송으로 유의미한 판례를 이끌어내고,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으며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38) 북경여성회의+10심포지움 이전 시기에도 물론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한국 동성애자연합>으로 이어지는 단체 간 상설연대체의 흐름 및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2002)과 같은 사안별 연대체의 역사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무지개행동>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단체 상설 연대체로는 가장 긴(그리고 점점 더 길어질) 역사를 가지고 있다.

39)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2005-2007.

40) <장애여성 공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2003-2005; 전신은 <차이가힘이되는여성연대>, 2001.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병리화하는 사회의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의 아픔을 보살피고 역량 강화를 돕는다.

4. 성소수자 정치운동 /진보정치 재구성과 여성성소수자 정치세력화

현재 진보정당의 범주에 속하는 정당들은 모두 성소수자관련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성소수자위원회를, <노동당>은 성정치위원회를, <녹색당>은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와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의 흐름을 잇는 현상으로, 성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이 진보정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중요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 차원에서 성소수자인권의 제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가에 대한 온도차는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성소수자 영역이 진보정당이라면 간과하기 어려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문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여성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려면 2008년 18대 총선에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진보신당> 최현숙의 사례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최현숙은 레즈비언이라는 존재를 총선이라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가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소수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100%를 위한 새로운 정치”(“출마선언문”中)를 기조로, 레즈비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의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치가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소수자 정치학을 선거운동판에서 풀어냈다. 당시 최후보는 비록 매우 저조한 득표로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얻었지만 그녀의 선거운동은 제도 정치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대표성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던진 거의 첫 번째 시도로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다.⁴¹⁾

또한 보다 직접적인 유권자 운동으로는 본인이 유권자로 속한 지역구에서 해당지역구 후보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역 삶살이가 구성되는 방식에 개입하며 지역 정치의 주체가 되는 방향이 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비혼여성, 독립 생활자까지 아우르는 <마포구 소수자유권자모임 보트피플>⁴²⁾이 바로 그러한 유권자운동의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⁴³⁾

5. 성소수자의 존재와 경험에 대한 지표화 및 이론화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소수자운동 진영은 성소수자의 삶이 처한 상황을 정체성별로 혹은 의제별로 조사하고 기록하고 통계를 내는 지표화 작업을 간헐적으로나마 꾸준히 해

41) 최현숙 선거에 대한 해당 보고서의 논의는 다음 글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토리, “최현숙 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격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55호, 2012년 3월-4월. pp. 40-49.

42)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마포지역단체 및 개인, 2012.

43) 이주사, “마포구 소수자유권자모임 보트피플 오김현주씨 인터뷰: 지역사회 소수자들, 유권자로 커밍아웃하기.”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2012/4/9.http://goo.gl/NONZQP.

왔다. 대표적인 작업으로 「레즈비언인권실태조사」(<레즈비언인권연구소>, 2004)⁴⁴⁾, 「성 전환자 인권실태조사」(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후원, 2006),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2007), 「레즈비언 빈곤층 실태조사」(민주노동당, 2009), 「성소수자 노동권 기초조사 인터뷰 전문」(<동성애자인권 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2010),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 실태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무지개행동>이반 스쿨팀,2012) 등이 존재한다.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실태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성소수자 인권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분석과 대안 마련을 목표로 2011년 발족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는 2014년 5월 다양한 정체성과 권리영역을 망라한 한국사회 성소수자 인권현황 첫 번째 연간 보고서⁴⁵⁾를 펴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국 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한국 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⁴⁶⁾를 내놓았다. 이 같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현황 보고 및 욕구조사는, 성소수자운동 진영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의제를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지표가 현실을 최대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사/통계작업을 수행해 내는 역량이 중요한 만큼, 당면의제를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회의 경향이나 현상을 촘촘히 읽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과 이론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무지개행동>은 2008년 1회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LGBT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⁴⁷⁾. 연례화된 이 포럼은 성소수자운동진영이 한해의 주요 활동의제들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성소수자관련 각종 연구의 성과들이 공유되는 장으로 의미가 크다.

VI. 과제와 제언

1. 여성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차별예방을 위한 장치

(1) 성적지향/성별 표현/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44) 박김수진, “레즈비언 561명을 만나다 : 국내 최초 레즈비언인권실태조사 결과.” 여성주의저널 일다.

2004/8/1. <http://goo.gl/xeVgpg>.

45)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 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

<http://goo.gl/0tRGnN>.

46)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조사 수행,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행, 2014. 다음 링크를 통해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http://goo.gl/92GXPU>.

47) 2008년 1회, 2009년 2회, 2010년-2011년 3회, 2012년 4회, 2013년 5회, 2014년 6회.

법 제정 추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이미 다수의 유럽국가나 북미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07년 10월 입법예고 이후 계속하여 법제정이 좌절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국민정서' 상 성적지향, 성별표현,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는 '이르다'는 특정 세력의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과 법적 보호는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항시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권보호에 시기상조란 없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2) 성적지향/성별 표현/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시/도 차원의 인권 조례 /헌장 제정

현재 시/도차원의 인권조례나 헌장에서 성적지향, 성별 표현,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헌장에 성적지향, 성별표현,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망라하여 명시함으로써 엄연히 지역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성적지향/ 성별 표현/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학생인권조례 항목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인권의식 함양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 공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4개의 지역에서는 십대 청소년 성소수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항목을 삭제/수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같은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학교 공간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 각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소수자 감수성 함양 교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0조,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제10조,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실제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감수성 함양교육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인권 관련 정보의 보고로 역할하고 다양한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관공서는 최근 마포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위한 장소 사용을 불허하고 서대문구청이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난동을 조장하는 등의 상황들에서처럼 도리어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인권 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5) 성소수자인권 정책 개발/실천을 위한 민간단체(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정책 마련을 독립적으로 맡는 부서나 책임자는 없는 상황이다. 설사 해당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책임자나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단독으로 현실적인 정책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선부른 인권정책 수립이나 통계화, 지표화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위험도 지닌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역에서 오래 활동해 온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가령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지난 이십여 년간 여성성소수자관련 현안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상담자료를 축적해 온 전문단체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는 양적/질적 방법론을 두루 동원하여 입체적인 방식으로 LGBTI 욕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인권 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각급 정부기관은 이러한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여성성소수자와 성소수자전반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차별/혐오 상황 대응을 위한 장치

(1)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비롯한 각종 혐오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및 이행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한국사회에 아직까지 마련된 바가 없다. 여성성소수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 ‘시민’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폭력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인 양 취급되기도 하는 시공간이다. 이러한 현실은 성소수자당사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정부와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왜곡된 발언과 인격모독이 엄연한 폭력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피해 여성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안 역시도 제정해야 한다.

(2)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혐오 폭력 사례 대응을 위한 검/경의 인식 제고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감수하고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검/경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 피해 여성성소수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검/경이 피해 여성성소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행사함으로써 이차가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수사 과정상 노출된 성적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자칫 피해자의 사회적 삶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⁴⁸⁾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그 배경으로 하는 문제이나 여성성소수자의 존재와 경험에 대한 검/경의 감수성 부재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을 검/경이 올바르게 대처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여성성소수자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법제도적 보장⁴⁹⁾

우리는 여성성소수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가족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치 않는 가족 형태는 거부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한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제 가족을 형성, 생활함에 있어 누구도 본인의 성적지향, 성적체성,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법제도적 보장을 정부에 요구한다.

48) <한국레즈비언상담소>(전 <끼리끼리>)는 B+10 “성적소수자” 보고서에서 ‘아웃팅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입장의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성적체성/성별정체성의 드러남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겪게 되는 사회적 동성애 혐오의 맥락,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낼 실효성이 아웃팅 자체의 범죄화와 법적 제재에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십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당시에는 아웃팅이 궁극적으로 야기하는 사태들이 개개인 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들을 무수히 접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막거나 완화할 나름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 활동가들에게 몹시도 갈급했음을 말해두고 싶다. 아웃팅=범죄라는 프레임의 전략적 유효성을 거듭 재검토하는 수년간의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졌다. 커밍아웃을 계기로 아웃팅을 통해서건 성적체성의 드러냄/드러남 이후에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차별과 폭력의 주체와 구조에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는게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말이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드러나면 큰일나는, 가급적 숨기는 게 상책인 무언가가 아니라, 드러나도 괜찮은, 드러나도 좋은, 드러나면 더 좋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는 일에 더욱 방점을 찍는 쪽으로 말이다. 아웃팅 행위 그 자체의 범죄화란 아웃팅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와 폭력의 온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는 노력은 아웃팅이 지닌 위험성을 필히 경감시키게 된다.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바로 오래 걸려 어렵게 도달한 이러한 인식에 있었다.

49)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2006년 결성)이 기획한 행사, 자료집, 기고문 등을 두루 참고하면 좋다. 자료집으로는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 기초자료집」(2008), 「가족구성권연구모임 5주년 자료집」(2011),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위한 ‘의료 결정권’ 워크샵 자료집」(2012), 「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자료 모음」(2013) 등이 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http://gagoonet.org/2013년 발족)의 웹사이트도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다.

(1) 이성 결혼과 혈연관계를 벗어난 생활 단위에 대한 법제도 상의 인지 및 권리 보장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중심의 현행 민법상 “가족” 범위 정의(민법 제779조)를 삭제해야 한다.
- 독신가구/1인 가구의 당사자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주거, 세금 등과 관련하여 가족 중심의 사회적 혜택들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 동성 커플이 엄연히 배우자관계로 인정받고 그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관계 관련법이 마련되고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 실질적 이성 커플 중 한쪽 배우자가 트랜스젠더로서 아직 본인이 인지하는 자기 성별로 법적인 성별 정정이 되지 않아 이들이 공부상 성별로서는 동성 커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비(非) 트랜스젠더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의 제도적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반드시 커플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이들의 경우 하나의 가족 단위로서 법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⁵⁰⁾

(2) 입양할 권리 및 임신/출산의 권리 보장

- 독신자 입양과 관련하여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입양 기준을 일관성 있게 조율해야 한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독신자라도 25세 이상이고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일 경우 요보호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기혼 이성부부에게만 허용함으로써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독신자를 기본적으로 입양할 자격이 충분치 않은 존재로 보는 상태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만을 독신자에게 허용한다는 건 독신자나 요보호아동 모두에게 차별적인 법 적용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비혼/독신여성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모든 독신자 및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모든 아동들에게 중요한 권리의 문제이다.⁵¹⁾
- 동성 커플의 배우자/동반자 관계 혹은 혼인관계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의 경우 부부로서 함께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성 커플 중 한쪽 배우자의 친생자를 다른 한쪽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하는 것 역시 가능해야 한다.
- 임신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달이 기혼 이성부부 중심의 난임/불임 타개책으로만 쓰이기

50)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혈연 및 혼인관계에 얽히지 않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및 부수법률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http://goo.gl/Xpvqa72>.

51) 최근 독신자의 친 양자 입양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구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소수의견) 합헌판결이 있었다. 2013년 9월 26일. 사건번호 2011헌가 42. 판결요지: <http://goo.gl/F9 NvZM>. 판결문 전문은 헌법재판정보 웹사이트(<http://goo.gl/ejm9RT>)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혜택이 되도록 대중적 인식 개선, 의료계 관습개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조사사항) 4항은 성별 정정허가요건의 완화 필요성, 신체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주거권 보장⁵²⁾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방식 변화

- 저소득층 수요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체를 늘려야 한다.
-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가족 및 공동체가 살기에 적절한 구조를 갖춘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신혼부부나 다 자녀가 구로 설정하는 것(이성 결혼 및 출산장려책으로 주택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만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이성 결혼 및 혈연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돌보며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들의 경우 실질적 부양관계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쉼터 운영 정책 마련

- 노숙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여성/성노동자, 청소년 쉼터 등 각종 쉼터에서 여성성소수자들이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별표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따돌림 당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경우 쉼터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성정체성전환 치료를 강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들의 성정체성을 매개로 쉼터 입소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 혹은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용 가능성별이 특정되어 있는 쉼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트랜스젠더 본인이 인지하는 자기 성별을 기반으로 해당쉼터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의료권/건강권보장

52) 주거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B+20/Post+2015 여성성소수자부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제별간담회에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진경님이 발제하신 내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 개인의 실질적 관계망을 고려하는 법적보호자제도 마련⁵³⁾

- 환자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및 채무보증 없이도 환자당사자의 입원동의, 입원 약정, 수술 동의만으로 의료조치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 입원동의서, 입원 약정서, 수술 동의서 등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대리인 자격을 이성 결혼 배우자 및 혈연 가족으로 한정하는 의료계 관행을 철폐하고 환자와 실질적인 돌봄관계 및 신뢰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나 공동체 구성원이 보호자/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가 직접 보호자/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 혈연 가족 중심의 보호자/대리인설정 관례 하에서 가족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HIV/AIDS감염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감염 사실(그리고 때로 성소수자 정체성 역시도)이 알려져 버리거나, 감염 사실을 알리고 나서 외면당해온 감염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부재하여 시급히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매우 난처해지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자/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트랜스젠더의 의료권/건강권 보장

- 의료적 조치의 각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 트랜스젠더 본인의 동의와 의지를 최우선시하고, 본인이 직접 보호자/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호르몬 치료 및 여러 단계/종류의 외과적 수술을 언제 어떻게 얼마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전적인 권리가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성별 정정허가를 받고자 원치 않는 의료적 조치까지 감행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 정정허가의 신체적/수술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성주체성장애” 혹은 “성전환증” 판정을 받고 의료적 조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상담받고, 안전하게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호르몬 치료 및 외과적 수술 등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성 확정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현재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 또한 거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기 성별 인식이 여성임이 분명할 경우 그러한 자기규정을 인정하여, 실질적 징병대상을 남성으로 한정된 현행 대한민국 징

53) 정현희(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의료 결정과 소수자의 자기 결정권」, 『복지 동향』 (2013년 2월, 통권 제172호)(<http://goo.gl/yOHhtS>)에 핵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병제를 고려할 때 병역이 면제되어야 한다.⁵⁴⁾

(3) HIV 감염 예방 및 HIV 감염인/ AIDS환자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확장⁵⁵⁾

- 가출/노숙청소년 성소수자 및 성판매업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 여성(MTF) 등 감염 취약계층 성소수자들의 상황에 걸맞은 검사제도 마련 및 예방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 HIV 감염인/AIDS환자가 복합적인 낙인과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치료제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각종 AIDS 치료제가 두루 국민건강보험상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 교육권 보장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에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전담부서를 마련한다. 학교 정책 및 학생복지 안전관련 부서, 교원능력개발 관련부서 및 상담교사 선발 등의 과정, 학생 인성 교육 및 학부모 연수과정 내에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과제가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

(2) 국/검정 교과서상의 성소수자 차별적/폭력적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성소수자인권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학습 및 토론과제들을 확대한다. 동성애를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는 내용, 동성애의 원인을 탐구,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은 일부 보수 종교집단 및 반동성애 학부모 집단 등의 교과서 개정 요구(교과서상의 성소수자 비가시화 요구)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폭력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성소수자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성소수자의 인권은 모두를 위한 인권” 기조를 천명하고, 학부모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별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직 공무원 및 공립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인 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방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지도 및

54) <트랜스로드맵>, “성별변경을 하지 않은 MTF의 경우 군대에 가야 하나요?” <http://goo.gl/VvoaNp>.

55) 한채윤은 「엮어서 다시 생각하기: 동성애, 성매매, 에이즈」, 『성의 정치성의 권리』(서울: 자음과 모음, 2012) 에서 사회적 낙인의 주요 대상 경험들인 동성애와 성매매와 HIV 감염이 어떻게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삶을 종횡으로 엮어내는지 살피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5) 노동권보장

(1) 성적지향, 성별표현,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승진차별, 임금차별,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창구를 고용노동부 직속으로 둔다.

(2)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혐오 폭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 직장 내 성소수자인식 개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한다. 직장문화 개선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차별구제절차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이후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4) 직장 내 구성원의 성별화 및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구분 없는 화장실 만들기, 성별 중립적인 유니폼 착용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